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6. 15(월) 평창군수(경제체육과)

나. 회부일자 : 2015. 6. 17(수)

다. 상정일자 : 2015. 6. 22(월) 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가 2001. 11. 06. 제정된 후 그동안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정 후 체육 시설 및 관리,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표준 용어의 정리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설관리 및 운영대상을 평창군이 소유한 모든 체육시설 규정하고, 이용자의 단체에 대한 기준, 사용료 감면 규정 세분화 및 정비, 체육시설위탁관리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수탁자가 신규 시설물 설치시 처리방법, 부서별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시 타부서의 장은 경제체육과장과 사전 협의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이 보다 효율적인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① 조례 제10조 제5항 “별표1”의 단체팀을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규정 하였는 바, 이는 10인이하 조직체는 단체로 규정 되지 않아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② 조례 제24조의 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수탁 관리자의 임의설치 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③ 조례 제25조 제2항의 소규모체육시설의 관리사무 위임시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의”를 “평창군”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제2조제2호 중 “부대시설”을 “ 부대시설”로, “시설내”를 “시설 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대 시설””을 “ “부대시설””로, “설비 또는 비품”을 “설비 또는 비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이 사용””을 “ “시설의 이용””으로, “시설이나 방송(텔레비전포함)”을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사용료””를 “ “사용자”이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7.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를 “부대시설 등을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를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으로,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 취소·또는 변경”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이용허가의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경합시”를 “경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장 및 동호회등”을 “ 직장 및 동호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제5호 중 “체육활동”을 “ 체육활동”으로, “전시등”을 “전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6조의 제목 “(사용허가 제한 등)”을 “(이용허가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부족등”을 “부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을 “설치 운영”으로,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를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종류별, 사용료”를 “시설종류별,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주민홍보등”을 “대주민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없을때”를 “없을 때”로, “기간등을 지체없이”를 “기간 등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기타”로, “판단될 대”를 “판단될 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10월~다음해 3월)
조 기	05: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제2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를 “이용자는”으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창군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표중 연습사용료기본액 이용구분의 단체(팀)”를 “의 단체”로, “1팀을”을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초과사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이용자가 이용시간”으로, “부대시설등을 사용”을 “부대시설 등을 이용”으로, “초과사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때”를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사용료를징수하여야”를 “이용료를 징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사용료외”를 “따라 이용료 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가 사용예정일”을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를 “(이용자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으로, “승인을받아 사용자 또는”을 “승인을 받아”로, “설치할수”를 “설치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사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 복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자가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을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이용자의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으로, “부속시설등”을 “부속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태만히하여”를 “태만히 하여”로, “부속시설등을”을 “부속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각각 “이용자”로, “체육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를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로 한다.

제17조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를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을 “이용자

는 그 이용목적인”으로, “징수할수”를 “징수할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최측”을 “주최 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매전”을 “발매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할시는”을 “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를 “범위 안에서 군수와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판매한후 사용자”를 “판매한 후 이용자”로, “사용자”를 각각 “이용자”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설사용중지)”를 “(시설이용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시설사용”을 “시설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동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할”을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소홀히하여”를 “소홀히 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천재지변등 불가한력”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및규칙의”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제2호 중 “수탁관리자”를 “ 수탁관리자”로, “인정될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제4호 중 “군수”를 “ 군수”로,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 납할 것을 전제로”를 “수탁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 고 원상복구 하여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준용)”을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 치하고자 할 경우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 며, 읍·면장은 년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1. 이용료 기본액

(단위:원)

구분	경기장		기본액	비 고
전 용 이 용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체 육 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대화문화체육관	90,000	
		계촌체육관	80,000	
		미탄체육관	8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70,000	
	테니스장		25,000	
	궁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 부 이 용	일 반 체 육 시 설	개인	1,200	·2시간 기준임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 력 단 련 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

경기장 구분		기본액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체 육 관	국민체육센터	150,000	
	대화문화체육관	130,000	
	계촌체육관	110,000	
	미탄체육관	11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90,000	
테니스장		35,000	
궁도장		1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전 화 : , (H.P) , (팩스)			
사용목적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사 유				
<p>「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p> <p>평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